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9. 3. 18.(월) / 총 1매(본문1)
담당 부서	건설산업과	담당자	·과장 박정수, 사무관 박균성, 사무관 박정규 ·☎ (044) 201-3542, 3543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타워크레인 장비 검사, 단속 등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.

-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(17.11.16)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허위등록 근절, 주요부품 인증제 도입, 비파괴 검사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.
- 특히, 타워크레인 연식별로 10년 이상 안전성 검토, 15년 이상 비파괴 검사를 의무화하였고, '18.9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(19.9.19 시행)에 따라 노후 장비에 대한 연식제한*도 도입하였습니다.
 - * 20년 초과 시 3년마다 정밀진단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 한해 사용가능(시행령 개정중)
 - 그리고, 타워크레인의 안전기준은 국제규격(ISO)을 반영한 국가표준(KS) 등을 포함하여 강화된 기준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 - 불법 개조, 연식 위조 등으로 등록된 불량 장비에 대해서는 '18.11월 부터 전수 조사를 통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 중(~19.12)이고, 앞으로 등록·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.
- 또한, 소형 타워크레인(원격조종 방식)의 사용 증가 및 인명사고 발생 등 안전상 우려를 감안하여, 조종사 면허제도 강화, 유형별 검사방식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연합뉴스, 3.18.) >

◆ 경실련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부실... 불법개조 횡행

- 낡은 수입 크레인도 등록 가능.. 건설기계 인증과정 강화해야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건설산업과 박균성 사무관(☎ 044-201-354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